

### 조정청구사건 954건 처리

위원회는 2008년 한 해 총 954건의 조정청구를 접수·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청구건수는 1,000건대를 넘어선 2006년과 2007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청구건수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사건 비중 꾸준히 증가

이를 청구권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50.4%로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청구가 34.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반론보도청구는 1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도입 첫째 16%(141건)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국가기관의 조정청구건수 대폭 감소

신청인 유형별로는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단체 18.8%, 회사 14.8%,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5.5%, 국가기관 3.4% 등의 순서를 보였다. 신청인 유형 중 국가기관의 청구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국가기관 청구건수는 32건에 머물렀는데 이는 2006년의 151건에 비해서는 119건, 2007년의 101건에 비해서는 69건이 감소한 것이다.

###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청구 비중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2008년 전체 청구건수 대비 각 매체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신문이 가장 높은 58.1%(554건)로 나타났고 방송과 인터넷신문이 각각 19.8%(189건)와 16.5%(157건)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비중이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청구건수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대비 9.4%p, 2007년 대비 5.7%p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 인터넷접수 방문접수보다 근소하게 앞서

2008년 청구사건을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37.5%(358건)를 나타내 통상 가장 많은 접수유형을 차지해왔던 방문접수(37.1%, 354건)를 넘어섰다. 인터넷접수는 언론중재법 시행 첫해인 2005년에 15.5%를 나타낸 후 2006년 22.9%, 2007년 29.8%를 차지해 해마다 7~8%p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피해구제율 72.9%로 위원회 설립이후 가장 높아

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여 피해가 구제된 비율은 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피해구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구제율은 2007년의 64.8%보다 8.1%p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954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42.1%(402건), 직권조정결정 5.5%(52건), 조정불성립결정 13.1%(125건), 기각 2.2%(21건), 각하 0.4%(4건), 취하가 36.7%(350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리결과 중 조정성립률의 경우 전년(34.4%)보다 7.7%p 높아진 것이다.

## 손해배상청구사건 피해구제율 72.0%, 손해배상액 평균 약 333만원

손해배상청구 324건 중 115건(35.5%)이 조정성립되었으며, 18건(5.6%)이 직권조정결정, 51건(15.7%)이 불성립결정, 134건(41.4%)이 취하, 6건(1.8%)이 기각·각하되었다.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이 약 333만 원, 최대액은 1천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 중간액은 275만 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액과 중간액의 경우, 전년에 비해 20~70여만 원 상승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사건 324건의 67.3%인 218건의 경우,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해유형별로는 명예훼손이 287건(88.6%)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등 기타 인격권 침해사례는 34건(10.5%)이었다.

## 중재사건 10건 처리

한편, 위원회는 조정사건 외 쌍방 당사자가 위원회의 중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한 10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9건은 손해배상청구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정정청구였다. 중재사건 10건 중 5건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며, 4건은 명예훼손, 나머지 1건은 음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다.

## 시정권고 282건, 사회적 법익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큰 폭 증가

또한 위원회의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754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82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으며, 제3자가 신청한 26건의 보도 중 7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자체 심의건 중 사회적 법익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192(68.1%)건으로 개인적 법익침해 건수 90(31.9%)건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전년도에 82건으로 41% 였던 것에 비하면 사회적 법익침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 제1장 조정신청 현황

#### 1. 청구건수

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954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러한 청구건수는 2007년의 1,043건에 비해 89건이 감소한 것으로 1,000건대를 넘어선 2006년과 2007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전히 많은 청구건수이다. 다만 청구건수는 언론중재법이 시행 2년째를 맞이했던 2006년의 1,087건을 정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데는 국가기관의 조정청구가 감소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한 해 국가기관의 조정청구는 32건에 그쳐 2006년의 151건에 비해 119건, 2007년의 101건에 비해 69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9건의 국가기관 청구건수 감소분은 2007년 대비 2008년의 전체 청구건수 감소분 89건의 77.5%를 차지한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청구건수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청구건수	759	883	1,087	1,043	954
전년대비 증감	35	124	204	△44	△89

#### 2. 중재부별 청구건수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청구건수

중재부 \ 연 도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서울	709	65.2	644	61.7	607	63.6
부산	42	3.9	25	2.4	24	2.5
대구	31	2.9	32	3.1	30	3.1
광주	55	5.1	63	6.0	46	4.8
대전	29	2.7	41	3.9	32	3.4
경기	113	10.4	84	8.1	108	11.3
강원	14	1.3	14	1.3	15	1.6
충북	13	1.2	23	2.2	19	2.0
전북	50	4.6	65	6.2	39	4.1
경남	20	1.8	37	3.5	27	2.8
제주	11	1.0	15	1.4	7	0.7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중재부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63.6%, 지역중재부가 36.4%로 나타나 주요 매체를 대부분 관할하고 있는 서울중재부의 사건처리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08년 한 해 동안 서울 1개 중재부의 처리건수는 평균 101건으로 이는 지역 1개 중재부의 평균 처리건수 34.7건에 비해 약 2.9배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중재부 중 경기중재부의 경우에는 2008년 한 해 108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해 서울중재부 평균 청구건수보다 오히려 많았다.

경기중재부에 이어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광주중재부와 전북중재부가 각각 46건과 39건을 처리해 비교적 높은 청구건수를 보였다.

### 3. 청구권별 청구건수

각 청구권별 청구건수를 보면, 정정보도청구 50.4%, 손해배상청구 34.0%, 반론보도청구 13.3%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정정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소폭(2.4%p) 줄어든 반면 반론청구는 약간(2.3%p) 늘어났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정청구나 반론청구 혹은 추후청구를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해서 제기한 사건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가폭은 2007년 대비 0.5%p의 증가에 머물렀는데 이는 2006년 대비 2007년의 손해배상청구 증가폭 4.2%p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건수

연도 청구명	2006		2007		2008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 정	546	50.2	551	52.8	481	50.4	1,578	51.2
반 론	211	19.4	115	11.0	127	13.3	453	14.7
추 후	12	1.1	28	2.7	22	2.3	62	2.0
손 배	318	29.3	349	33.5	324	34.0	991	32.1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3,084	100.0

〈표 1-4〉 최근 3년간 병합청구사건 건수

연 도 청구명	2006		2007		200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정정·손배	198	65.6	232	83.8	211	72.8
정정·반론	57	18.9	19	6.9	17	5.9
반론·추후					1	0.3
반론·손배	16	5.3	12	4.3	12	4.1
추후·손배	10	3.3	5	1.8	13	4.5
정정·반론·손배	20	6.6	9	3.2	35	12.1
정정·추후·손배	1	0.3			1	0.3
계	302	100.0	277	100.0	290	100.0

2008년 병합청구된 사건은 모두 290건이었는데, 이중 정정과 손해배상을 병합청구한 것이 7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정 · 반론 · 손해 청구사건이 12.1%를 차지, 뒤를 이었다. 이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정정과 손해배상이 병합청구된 비율은 11.0%p 감소한 반면, 정정 · 반론 · 손해 병합청구된 비율은 오히려 8.9%p 증가했다.

#### 4.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2008년 청구된 954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단체 18.8%, 회사 14.8%,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5.5%, 국가기관 3.4%, 교육기관 1.5%, 종교단체 1.2%의 순서를 나타냈다.

신청인 유형 중 국가기관의 청구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국가기관 청구건수는 32건에 머물렀는데 이는 2006년의 151건에 비해서는 119건, 2007년의 101건에 비해서는 69건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신청인 유형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일반단체의 청구건수 비중이 회사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2007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표 1-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신청인유형 \ 연 도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개 인	529	48.7	525	50.3	523	54.8
국가기관	151	13.9	101	9.7	32	3.4
지자체 · 공공단체	46	4.2	62	5.9	52	5.5
일반단체	172	15.8	145	13.9	180	18.8
종교단체	9	0.8	10	1.0	11	1.2
회 사	145	13.3	176	16.9	142	14.8
교육기관	35	3.2	24	2.3	14	1.5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 5.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2008년 전체 청구건수 대비 각 매체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신문이 가장 높은 58.1%로 나타났고 방송과 인터넷신문이 각각 19.8%와 16.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기존의 조정대상의 60~70%를 차지하던 신문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온 반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비율은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적인 청구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청구사건의 비율은 2006년 대비 9.4%p, 2007년 대비 5.7%p의 증가폭을 나타내 조정청구 대상매체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2008년 인터넷신문 대상 청구건수인 157건은 방송 대상 청구건수인 189건의 83.1%에 육박하는 것으로 인터넷신문이 이미 주요 조정청구대상으로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표 1-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신 문	752	69.2	634	60.8	554	58.1
방 송	216	19.9	250	24.0	189	19.8
잡 지	25	2.3	10	1.0	12	1.3
뉴스통신	17	1.6	30	2.9	33	3.5
인터넷신문	77	7.1	113	10.8	157	16.5
기 타		0.0	6	0.6	9	0.9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이들 매체 세부유형을 통해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의 청구건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즉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청구건수는 지상파TV(158건)와 비교해 볼 때 1건밖에 적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뉴스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인터넷매체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4.6%와 19.8%로 매체 세부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년에 비해 그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다. 언론중재법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에 대한 조정청구가 가능해져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7〉 매체 세부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 청구건수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 터넷 신 문	기 타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TV	라디오	종합유선 방송				
954	235	189	130	158	4	27	12	33	157	9
100.0(%)	24.6	19.8	13.6	16.6	0.4	2.8	1.3	3.5	16.5	0.9

## 6. 주된 침해유형

조정대상 보도의 침해유형은 몇 가지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침해사항 하나만을 주된 침해로 분류하면 명예훼손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 이외의 인격권 침해 비율은 전체 대비 4.8%에 그쳐 2007년의 7.7%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2006년 5.5%에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 감소한 것이다. 명예 이외의 인격권 침해 청구건 46건 중에서 초상권 침해가 63.0%(29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성권 침해가 많았다.

〈표 1-8〉 최근 3년간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주된 침해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명예훼손	1,004	92.4	953	91.4	899	94.2
신용훼손	17	1.6	2	0.2	6	0.6
초상권침해	48	4.4	53	5.1	29	3.0
음성권침해	7	0.6	12	1.2	10	1.0
성명권침해	1	0.1	3	0.3	4	0.4
프라이버시침해	4	0.4	11	1.1	3	0.3
기 타	6	0.6	9	0.9	3	0.3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이 침해된 46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상이나 음성 또는 성명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표해 문제가 된 것이 대다수(40건, 86.9%)였다. 그밖에 동의는 있었지만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표함으로써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가 4건, 보도내용과 무관함에도 자료화면으로 초상등이 공표된 사례도 2건 있었다.

〈표 1-9〉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비율(%)
동의 없이 무단공표	40	86.9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4	8.7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	4.3
계	46	100.0

## 8. 조정대상기사의 분야

2008년 조정대상기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나 고발 등을 다룬 사회기사 비중이 70.5%에 이르렀으며, 정치·선거 관련기사 6.3%, 스포츠·연예기사 4.3%, 경제·산업기사 3.7%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연예 관련기사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3.1%p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10〉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 수	비 율(%)
정치·선거	60	6.3
국방·외교	1	0.1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 수	비 율(%)
경제·산업	35	3.7
사회(사건/사고/고발)	673	70.5
보건·복지	28	2.9
스포츠·연예	41	4.3
레저·생활	7	0.7
환 경	4	0.4
종 교	33	3.5
노 조	28	2.9
교 육	16	1.7
미 디 어	12	1.3
기 타	16	1.7
계	954	100.0

### 9. 조정대상 기사의 유형

방송매체를 제외한 신문·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기사의 형식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81.2%로 가장 많았고, 탐사·심층·기획보도 8.0%, 논단 및 칼럼기사 2.6%, 비평기사 2.5%, 사설기사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견성 기사라 할 수 있는 사설이나 논단 및 칼럼 또는 비평기사를 모두 더하면 7.2%(55건)로 그 비중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유형 기사들의 경우 주로 의견의 전제사실이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표 1-11〉 조정대상 기사(방송 외) 유형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유형별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621	81.2
사 설	16	2.1
논단 및 칼럼	20	2.6
인 터 뷰	5	0.7
외부필자 기고	9	1.2
비 평	19	2.5
탐사·심층·기획보도	61	8.0
사 진	6	0.8
가 십	2	0.3
기 타	6	0.8
계	765	100.0

방송을 상대로 조정청구된 189건을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별로 살펴보면, 뉴스가 68.3%로 가장 많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16.4%, 교양 프로그램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는 적지만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조정청구도 7건 있었다.

〈표 1-12〉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

방송 장르별	건수	비율(%)
뉴스	129	68.3
시사고발	31	16.4
토론	1	0.5
교양정보	16	8.5
연예, 스포츠	3	1.6
다큐멘터리	7	3.7
기타	2	1.0
계	189	100.0

## 10. 접수유형

2008년 청구된 954건을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358건, 37.5%)가 가장 많았다. 이는 그 동안 가장 많은 접수유형을 차지해왔던 방문접수(37.1%)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2005년 7월 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접수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터넷접수는 언론중재법 시행 첫해인 2005년에 15.5%를 나타낸 후 2006년 22.9%, 2007년 29.8%를 차지해 해마다 7~8%p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용자 중심의 웹2.0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13〉 최근 3년간 접수유형별 청구건수

연도 접수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방문	580	53.4	454	43.5	354	37.1
우편	245	22.5	251	24.1	233	24.4
인터넷	249	22.9	311	29.8	358	37.5
구술	13	1.2	27	2.6	9	0.9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 제2장 조정처리결과 현황

### 1. 처리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42.1%, 직권조정결정 5.5%, 조정불성립결정 13.1%, 취하 36.7%, 기각 2.2%, 각하 0.4%로 각각 집계되었다. 조정성립률은 전년에 비해 7.7%p 높아진 반면 불성립결정률은 5.5%p 낮아졌다. 조정성립률은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권 조정결정의 경우 동의율이 2007년은 40.7%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는 67.3%에 이르러 직권조정결정 10건 중 6~7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구분 연도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100.0(%)	32.8	2.7	2.6	20.8	2.0	1.2	38.0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350(237)
	100.0(%)	42.1	3.7	1.8	13.1	2.2	0.4	36.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2. 피해구제율

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여 피해가 구제된 비율은 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피해구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구제율은 2007년의 64.8% 보다 8.1%p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2-2〉 피해구제율

청구건수 [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954	25	929	677	72.9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조정건수 = 청구건수 - 기각·각하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조정결정 중 동의건수+(불성립결정건 또는 직권조정결정 중 이의신청건 또는 취하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건수

### 3. 청구권별 처리결과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반론청구가 75.8%, 정정청구 72.8%, 손해청구 72.0%, 추후청구 70.0%로 각각 나타나 청구권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70.0%를 넘는 고른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이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정정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구제율이 각각 9.1%p와 8.9%p 상승했다. 정정청구의 피해구제율이 70.0%대를 넘어선 것은 최근 10년 내 처음 있는 일이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성립률은 2007년의 22.1%에 비해 13.4%p 상승한 35.5%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밖에 통상 80~90%대의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이던 추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전년대비 10.8%p 낮아진 점은 다소 특이하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계 속							
2006	정 정	546	220	13	10		108	(1)	14	12	169	(90)	62.3
	반 론	211	79	6	8		37	(1)	2		79	(42)	61.2
	추 후	12	8				1				3	(3)	91.7
	손 배	318	49	10	10		80		6	1	162	(115)	55.9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정 정	551	223	12	17	(1)	103	(5)	22	3	171	(94)	63.7
	반 론	115	52	2	1		22		4	1	33	(25)	71.8
	추 후	28	7				2		2		17	(14)	80.8
	손 배	349	77	8	14	(1)	67		14	2	167	(124)	63.1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정 정	481	220	18	9		60	(1)	8	2	164	(104)	72.8
		100.0(%)	45.7	3.7	1.9		12.5		1.7	0.4	34.1		
	반 론	127	56	6	1		12		7		45	(29)	75.8
		100.0(%)	44.1	4.7	0.8		9.4		5.5		35.4		
	추 후	22	11				2		2		7	(3)	70.0
	100.0(%)	50.0				9.1		9.1		31.8			
손 배	324	115	11	7		51	(2)	4	2	134	(101)	72.0	
	100.0(%)	35.5	3.4	2.2		15.7		1.2	0.6	41.4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90.9%로 가장 높고, 국가기관 78.1%, 개인 75.7%, 회사 69.9%, 일반단체 69.7%,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66.7%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차지하는 개인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이 2007년의 63.8% 대비 1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들의 청구가 전체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 상승도 눈에 띈다. 이 유형 신청인의 피해구제율은 66.7%로 전년의 53.2%보다 13.5%p 높아졌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6	개 인	529	163	20	15		93		16	2	220	(128)	60.9	
	단 체	국가기관	151	66	3	7		30		1		44	(35)	69.3
		지자체·공공단체	46	17	4	1		10		1		13	(8)	64.4
		일반단체	172	55	2	5		34		3	11	62	(36)	58.9
		종교단체	9	1				8						11.1
		회사	145	35				49	(2)	1		60	(34)	49.3
		교육기관	35	19				2				14	(9)	80.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개 인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단 체	국가기관	101	44	1	2		15	(1)	3		36	(27)	74.5
		지자체·공공단체	62	21		1		20				20	(12)	53.2
		일반단체	145	48	3	1		31		7	3	52	(40)	67.4
		종교단체	10	6								4	(4)	100.0
		회사	176	65	3	7		38	(1)	4		59	(37)	61.6
		교육기관	24	10		2				1		11	(6)	69.6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개 인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단 체	국가기관	32	13	3	2		2				12	(9)	78.1
		지자체·공공단체	52	28	1			10		1		12	(5)	66.7
		일반단체	180	70	5	8		19		5		73	(47)	69.7
		종교단체	11	5								6	(5)	90.9
		회사	142	60	6	1		22		2	4	47	(29)	69.9
		교육기관	14	5				3				6		35.7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인, 조합대표 및 협회장, 학생 등이 90.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고, 시민활동가, 교육자, 개인사업가 등도 평균보다 높은 75.0% 이상의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한편, 넓게 보아 공직자로 묶을 수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 군인·경찰, 기초·광역 단체장 또는 의원의 경우, 평균 피해구제율이 66.1%에 머물러 전체 피해구제율 72.9%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인사업가의 피해구제율 75.0%와 비교할 경우, 8.9%p 가까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조정결과는 우리 법원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인과 사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 분 직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22	8	1		6			7 (6)	72.7
법조인	2				2				0.0
공무원	23	7	3		5			8 (4)	60.9
군인/경찰	38	9	2	2	4			21 (16)	71.1
기초광역단체장/의원	35	13	2		9			11 (7)	62.9
정당정치인	7	3						4 (2)	71.4
의료인	14	5			2			7 (5)	71.4
문화예술인	9	6						3 (3)	100.0
종교인	26	12		2	6	1		5 (5)	68.0
회사원	24	9	2	1	5			7 (5)	66.7
언론인	11	4			4	1		2 (1)	50.0
교육자	47	25	4		3			15 (8)	78.7
개인사업가	68	28	4		7			29 (19)	75.0
금융업종사자	1							1	0.0
학 생	11	7						4 (3)	90.9
시민활동가	15	12						3 (1)	86.7
조합대표협회장	25	14				3		8 (7)	95.5
기타	145	59	2	1	16 (2)	8		59 (50)	82.5
계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	100.0	42.3	3.8	1.1	13.2	2.5		37.1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뉴스통신이 93.9%의 피해구제율을 보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신문 80.4%, 신문 74.9%, 방송 58.9%, 잡지 50.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피해구제율 72.9%와 비교해 본 결과, 뉴스통신과 인터넷신문은 전체 피해구제율보다 각각 21.0%p와 7.5%p 높은 반면, 방송매체와 잡지는 전체 피해구제율보다 각각 14.0%p와 22.9%p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 유형에 따라 피해구제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를 2007년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과 비교해보면 뉴스통신의 경우 28.4%p, 인터넷신문의 경우 15.4%p 각각 높아졌다. 2008년 인터넷신문의 청구건수가 전체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에 달하고 이 비율이 전년(10.8%)대비 5.7%p가 늘어난 것임을 감안해본다면 인터넷신문의 피해구제율 상승은 2008년 전체 피해구제율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6	신문	752	242	20	16	144		13	7	310	(193)	62.2	
	방송	216	57	8	9	66	(2)	2	5	69	(30)	46.4	
	잡지	25	17	1	1	2				4	(2)	80.0	
	뉴스통신	17	6			1		2	1	7	(7)	92.9	
	인터넷신문	77	34		2	13		5		23	(18)	72.2	
	기타	0											0.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신문	634	226	12	15	(1)	112	(3)	25		244	(172)	68.0
	방송	250	71	7	17	(1)	52	(1)	11	1	91	(53)	55.9
	잡지	10	4	2		2					2	(2)	80.0
	뉴스통신	30	10	1		6	(1)	1		12	(7)	65.5	
	인터넷신문	113	44			22		5	5	37	(23)	65.0	
	기타	6	4								2		66.7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신문	554	241	22	7	69	(3)	5		210	(145)	74.9	
	방송	189	77	2	5	35		9		61	(27)	58.9	
	잡지	12	5		1	2				4	(1)	50.0	
	뉴스통신	33	15	1	2					15	(15)	93.9	
	인터넷신문	157	62	8	2	17		5	4	59	(49)	80.4	
	기타	9	2	2		2		2		1		57.1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음성권이나 성명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유형에서 90.0% 이상의 대단히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유형의 경우 전체 피해구제율 72.9%에 근접하는 72.4%의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초상권 침해유형은 그보다 약간 높은 75.0%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용훼손의 경우, 66.7%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6	명예훼손	1,004	318	20	25		213		20	13	395	(238)	59.3
	신용훼손	17	5	2			5	(2)			5	(4)	76.5
	초상권	48	27	6	3		5				7	(3)	75.0
	음성권	7	4	1							2	(1)	85.7
	성명권	1					1						0.0
	프라이버시	4	1				1				2	(2)	75.0
	기 타	6	1				1		2		2	(2)	75.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명예훼손	953	331	18	29	(1)	185	(5)	38	4	348	(233)	64.5
	신용훼손	2					2						0.0
	초상권	53	21	3	2	(1)	2				25	(18)	81.1
	음성권	12	1	1	1		3				6	(3)	41.7
	성명권	3									3	(1)	33.3
	프라이버시	11	4				1			1	5	(2)	60.0
	기 타	9	2				1		4	1	1		50.0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명예훼손	899	375	35	16		122	(3)	18	4	329	(222)	72.4
	신용훼손	6	3								3	(1)	66.7
	초상권	29	11		1		3		1		13	(10)	75.0
	음성권	10	5								5	(4)	90.0
	성명권	4	4										100.0
	프라이버시	3	3										100.0
	기 타	3	1						2				100.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8.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08년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액의 평균은 약 333만 원, 최고액은 1,000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 중간액은 275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액만 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중간액을 비교해 보면 2007년에 비해서는 75만 원, 2006년에 비해서는 125만 원이 증가했다. 소폭이나마 손해배상조정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권리구제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 참고로, 조정액 평균 333만 원은 2008년 중재사건의 중재액 평균인 232만 원보다 약 100만 원이 많다.

〈표 2-8〉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구 분 연 도	청 구 액				조 정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6	10,000	3,000,000,000	109,545,629	25,000,000	300,000	15,000,000	3,229,750	1,500,000
2007	1	100,000,000,000	400,663,571	20,000,000	490,000	10,000,000	3,133,462	2,000,000
2008	110,000	10,000,000,000	185,920,574	20,000,000	300,000	10,000,000	3,331,250	2,750,000

## 9.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조정액을 살펴보면,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 10건 중 6건 꼴로 100~500만 원 사이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200~500만 원 사이의 분포율이 34.4%로 가장 높았고, 100~200만 원 사이가 28.1%로 그 다음이었다. 그밖에 500~1,000만 원 사이는 18.8%, 1,000만 원 이상과 100만 원 미만은 각각 11.3%를 나타냈다.

2008년 조정액의 경우 2006년이나 2007년과 달리 200~500만 원 사이의 분포비율이 100~200만 원 사이의 분포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조정액이 소폭이나마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9〉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구 분 연 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계
2006	7	15	11	1	6	40
%	17.5	37.5	27.5	2.5	15.0	100.0
2007	4	19	15	9	5	52
%	7.7	36.5	28.8	17.3	9.6	100.0
2008	3	9	11	6	3	32
%	9.4	28.1	34.4	18.8	9.4	100.0
계	14	43	37	16	14	124
%	11.3	34.7	29.8	12.9	11.3	100.0

## 제3장 중재신청 처리결과 현황

### 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조정사건과 별도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중재신청한 건수는 10건으로 전년의 14건보다 4건 줄었다. 이를 주된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상권 침해가 5건, 명예훼손이 4건, 음성권 침해가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재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08년까지 접수·처리된 31건의 주된 침해유형을 보면, 초상권이 64.5%(20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초상권 침해가 다른 경우보다 인격권 침해여부를 가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연도 \ 구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6	7	3		3	1			
2007	14			12			2	
2008	10	4		5		1		
계	31	7		20	1	1	2	
%	100.0	22.6		64.5	3.2	3.2	6.5	

### 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2008년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대부분(90.0%)이다. 중재사건을 3년간으로 묶어볼 경우 전체 중재사건 31건 중 26건인 83.9%가 손해배상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의 배상이 비교적 명백하게 필요해 보이는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가 위자료 산정을 중재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연도 \ 구분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정 정	1	1					
	반 론	1	1					
	손 배	5	5					
	계	7	7					
2007	정 정	2	2					
	반 론							
	손 배	12	12					
	계	14	14					
2008	정 정	1	1					
	반 론							
	손 배	9	9					
	계	10	10					

### 3. 손해배상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2008년 손해배상 중재사건의 중재액 평균은 약 232만 원으로 중재사건의 청구액 평균 약 1,589만 원의 14.6% 수준이다. 중재 최고액은 4백만 원, 최저액은 90만 원이었고 중간액은 200만 원이었다. 이러한 액수는 2007년의 평균액 등과 비교해 볼 때 약 70~1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08년 중재액 평균은 2008년 조정액 평균인 333만 원보다 약 100만 원 적은 것이다.

〈표 3-3〉 손해배상 중재신청사건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구 분 연 도	청구건수	청 구 액				중 재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6	5	10,000,000	30,000,000	22,000,000	20,000,000	700,000	7,500,000	4,240,000	5,000,000
2007	12	1,000,000	30,000,000	7,383,333	5,000,000	300,000	3,000,000	1,750,000	1,350,000
2008	9	5,000,000	30,000,000	15,888,889	15,000,000	900,000	4,000,000	2,322,222	2,000,000

## 제4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12건(청구건수 17건)이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것은 3건, 양당사자 모두가 이의신청한 것은 1건이었다. 이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 결과는 인용이 5건, 취하와 기각이 각 1건, 계속이 5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쳐 법원에 자동 소제기된 사건의 1심 결과는 2007년의 경우, 인용률(인용건수/소취하 제외 소송건수)이 92.9%에 이르렀다.

〈표 4-1〉 연도별 자동소제기현황 및 법원 1심 판결결과

연도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계속
2006	24	6	6	8	2	2	4	20		16	4	4	
2007	21	6		4	10	1	1	17	3	13	7	1	
2008	12	4		3	4	1	3	8	1	5	1	1	5
계	57	16	6	15	16	4	8	45	4	34	12	6	5

※ 1심 결과에 나타난 인용건수 합계 34건에는 화해권고결정 8건과 강제조정결정 4건이 포함되어 있음

〈표 4-2〉 2008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 현황

매체명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계속
국제신문	1	1						1					1
동아일보	1				1		1						1
연합뉴스	1				1		1				1		
월간조선	1	1						1					1
장로교연합신문	1				1			1					1
하나로신문	1	1						1					1
합평신문	1			1					1	1			
해남타임즈	1				1		1			1			
MBC	4	1		2		1		4		3	1		
계	12	4		3	4	1	3	8	1	5	1	1	5

## 연도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 ■ 조 정

1981. 3. 31 ~ 2008. 12. 31.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계	12,318	4,112	249	229	(27)	2,393	(272)	305	76	4,954	(2,642)	61.2%
	100.0%	33.4%	2.0%	1.9%		19.4%		2.5%	0.6%	40.2%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 / 조정건수

\*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 조정불성립결정· 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진 건수

### ■ 중 재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치 리 결 과					
		중재결정	조정성립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계	31	31					

## ● 시정권고현황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754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82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으며, 제3자가 신청한 26건의 보도 중 7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표 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08. 12. 31.

연도	구분 권고 건수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0															
1985	0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75		124	19	1	31	112	2
계	5,477	717	133	1,826	1,033	289	1,004	325	150		4,936	97	16	251	174	3
	100%	13.1%	2.4%	33.3%	18.9%	5.3%	18.3%	5.9%	2.7%		90.1%	1.8%	0.3%	4.6%	3.2%	0.1%

### 가.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분석

2008년에는 사회적 법익침해로 인한 시정권고건수가 192건(68.1%)으로 개인적 법익침해건수(90건 31.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전년도에 82건으로 41%였던 것에 비하면 사회적 법익 침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침해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상세 묘사 92건(32.6%),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수법 상세묘사 및 성 관련 선정정보) 73건(25.9%),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공개 48건(17.0%), 사생활 침해 30건(10.6%),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27건(9.6%),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8건(2.8%),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 나.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분석

2008년 한 해 동안 자체심의를 통해 시정권고 결정된 282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일간지가 121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신문 111건(39.4%), 뉴스통신 30건(10.6%), 주간지 19건(6.7%), 월간지 1건(0.4%) 순이었다. 일간지 121건 가운데서는 지역일간지가 90건(74.4%)으로 집계돼 전년도(126건 중 105건, 83.3%)와 마찬가지로 중앙일간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인터넷신문이 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된 이후 2006년 16건, 2007년 43건, 2008년 111건으로 해마다 시정권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년도에는 43건으로 일간지(126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11건으로 크게 늘어 일간지(121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 2008년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08. 1. 1. ~ 2008. 12. 31.

간 별	구 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 폭 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 신 질 환 자 신원공개	피 의 자 피 고 인 신원공개	목 격 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 생활 침 해 등	마약용량 등 용법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 타	
일간지	중앙	31	2		2		4	1	13	9	
	지역	90	1		27	5	6	11	26	14	
주간지	종합	10						5	2	3	
	지역	9	1		3		1	4			
월간지		1								1	
뉴스통신		30			10	2		3	8	7	
인터넷신문		111			6	1	19	3	43	39	
총 계		282	4	0	48	8	30	27	92	73	
		100%	1.4%	0.0%	17.0%	2.8%	10.6%	9.6%	32.6%	25.9%	

### 다. 신청심의 현황

2008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 신청은 총 26건이 접수되어 2007년도 39건에 비해 13건이 감소했다. 매체별로는 방송 11건(42.3%), 일간지 6건(23.1%), 인터넷신문 4건(15.4%), 뉴스통신 3건(11.5%), 기타매체 2건(7.7%) 순이었으며, 침해법익 유형별로는 개인적 법익 관련 18건(69.2%), 사회적 법익 관련 8건(30.8%)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26건 중 7건에 대해서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져 시정권고율은 26.9%를 기록했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7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일간신문 3건(42.8%), 방송 2건(28.6%),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각 1건(14.3%)이었다.

〈표 3〉 2008년도 신청심의 의결현황

2008. 1. 1. ~ 2008. 12. 31.

구 분 간 별		계	신 청 유 형				처 리 결 과				
			개인적 침해	사회적 침해	국가적 침해	기 타	시정권고	기 각	각 하	취 하	기 타
일간지	증 앙	6	5	1			3			3	
	지 역	0									
주간지	중 합	0									
	지 역	0									
방 송		11	8	3			2	8			1
월간지		0									
뉴스통신		3	1	2			1	1		1	
인터넷신문		4	2	2			1			3	
기 타		2	2							2	
총 계		26 100%	18 69.2%	8 30.8%	0 0.0%	0 0.0%	7 26.9%	9 34.6%	0 0.0%	9 34.6%	1 3.8%